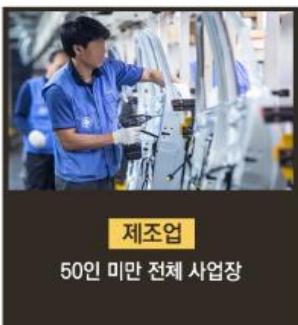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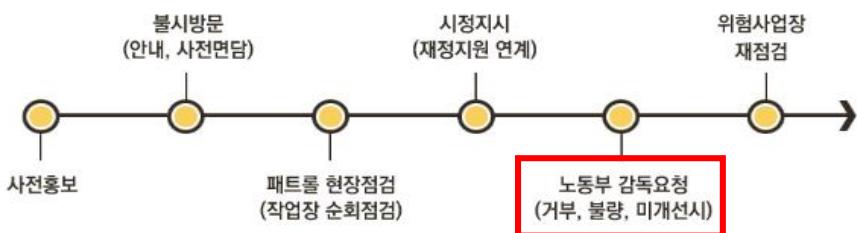
패드를 현장점검

페트로 현장점검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의 초기 진입을 위해 사고사망 발생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사고사망 다발 우선순위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후, 사망 위험요인, 기인률 등 현장점검 대상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실질적 안전조치가 확보하도록 하는 점검입니다.

사업대상



추진절차



점검사항

업종별 핵심 점검사항(3대 안전조치)을 포함하여 현장 중심의 사망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 점검



건설업(추락)



### 제조업(끼임)



공통(보호구 착용)

## < 사망사고 핵심 점검사항 >

(추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작업방한 안전단간, 방장·개구부덮개 설치</li> <li>②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</li> </ul>
(끼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상작업의 경우: 키임 위험기기의 방호조치, 동력차단장치(비상정지장치)</li> <li>② 유자·보수 등 비정형작업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운전정지</li> <li>▲ LOTO(Lock Out:잠금장치/Tag Out:표지판) 설치</li> <li>▲ 작업지휘자(감시자) 배치</li> </ul> </li> </ul>
(보호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안전모</li> <li>② 안전대</li> <li>③ 안전화 지급, 착용 및 상시관리</li> </ul>

## ■ 정치사학

- 위험설비(사업)의 안전조치 - 비정형작업 시 사업절차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“시망시고 위험 시정 지시서”를 작성 후 점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개선결과 확인
  - 점검 시 즉시시정 불응, 개선기간 내 개선조치 미이행, 고의로 개선을 기피하는 사임장에 대하여 감독 요청 신사  
※ 점검거부, 방해, 기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